

## 제3회 전국 대학(원)생 혁신 · 경쟁 · 규제법 논문경연대회

### I. 논문 공모 안내

#### 1. 목적

고려대학교 혁신 · 경쟁 · 규제법 센터(ICR Center)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, 대학(원)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3회 전국 대학(원)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.

#### 2. 참가 대상

- 전국 대학(원)생:  
대학생(전공무관), 일반대학원생(석사/박사과정), 법학전문대학원생
- 참가 형태는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(최대 2인)

#### 3. 논문 주제

- ICR센터의 설립취지([www.icr.re.kr](http://www.icr.re.kr) 참조)에 부합하는 자유주제. 단,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가 있어야 함.
- 구체적으로는 경쟁법 · 규제법 · 방송통신법 · 지적재산권법 각 분야, 또는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.

#### 4. 시상 내역

- 최우수 논문 1편  
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 및 해외학술행사 참가기회
- 우수 논문 2편  
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
- 장려 논문 3편  
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상금 100만원
  - 수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은 후원 로펌에 인턴 등으로 지원 시,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음 (논문심사에는 ICR센터의 기관 후원회원인 6개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함)
  - 논문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함
  - 수상논문은 ICR센터 발간 『규제와 법정책』에 게재

-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제공
- 수상자는 상금 수령시,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함

## 5. 논문의 평가 기준

-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시의적절성
-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
- 연구방법의 타당성·적절성 및 참고자료의 신뢰성
-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
- 논문의 형식기준

※ 응모 논문은 타 기관이나 경연대회 등에 중복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.  
※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(표절, 대리 작성 등) 또는 타 경연대회 중복수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, 심사에서 제외하며, 시상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
※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추진 일정

- 8월 28일(금) 오후 5시 논문접수마감
- 9월 23일(수) 수상자 발표
- 10월 30일(금) 수상논문발표대회 및 신진학자 발표대회

## 7. 제출

- ICR센터 사무국 메일 [icr@icr.re.kr](mailto:icr@icr.re.kr)로 논문과 이력서 제출 (이력서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)

## II. 논문 작성 요령: “규제와 법정책” 심사규정을 따름

### 1. 원고작성 기준

- (1)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Microsoft 『워드』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ICR센터 사무국으로 제출한다.
- (2) 제출원고의 구성
  - 1) 제출원고는 『표지-제목-저자 표시-국문초록-국문주제어(5개 내외)- 목차개요(큰제목까지 만)-본문-참고문헌-영문초록(권장사항)-영문 주제어(권장사항)』의 순으로 구성한다.

- 2)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(A4용지 25매)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, 저자 성명, 소속기관과 직책, 주소, 연락처 (사무실 및 휴대전화번호, e-mail 주소)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4) 영문 초록에는 논문제목, 저자명, 초록본문, 주제어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5) 목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.
  - I ('큰제목'으로 설정)
  - 1. ('중간제목'으로 설정)
  - (1) ('작은제목'으로 설정)
  - 1) ('아주작은제목'으로 설정)
  - (가) ('바탕글'로 설정)
  - 가) ('바탕글'로 설정)
  - i ) ('바탕글'로 설정)

### (3) 원고의 편집형식

- 1) 편집용지(A4)의 여백주기
  - 위쪽: 20, 아래쪽: 15, 왼쪽: 30, 오른쪽: 30, 머리말: 15, 꼬리말: 15.
- 2) 글자모양
  - 서체: 바탕, 자간: -5, 장평: 100, 크기: 10.
- 3) 문단모양
  - 왼쪽: 0, 오른쪽: 0, 들여쓰기: 10, 줄간격: 160, 문단 위: 0, 문단 아래: 0, 낱말간격: 0, 정렬방식: 혼합.

## 2. 각주의 표기

### (1) 기본원칙

- 1)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. 단,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.
- 2) 각주의 인명, 서명,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쓰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, 그 이후의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. 예) Harvard Law Review -> H. L. R.

### (2)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.

- 1) 저서의 인용
  - (가) 저자명, 『서명』, 판수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면수.
  - (예) 김남진/김연태, 『행정법 I』, 제17판, 법문사, 2013, 10면.

(나)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성명으로 표기한다.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성

명을 쓰고 “옮김”을 덧붙인다.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.

(예) 프랑크 잘리거 지음/윤재왕 옮김, 『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』, 세창출판사, 2011, 10면.

## 2) 정기간행물의 인용

(가)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「잡지명」 제○권 ○호, 출판년도, 인용면수 (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)

(예) 김연태, “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”, 「안암법학」 제35권, 안암법학회, 2011. 11면.

(나) 월간지의 경우 제○권 ○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○○○○년 ○월호로 대신 할 수 있다.

(다)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“옮김”을 덧붙인다.

## 3) 기념논문집의 인용

(가)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기념논문집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면수.

(나)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“옮김”을 덧붙인다.

## 4) 판례의 인용

(가) 판결: 대법원 ○○○○.○○.○○. 선고 ○○◇○○ 판결.

(나) 결정: 대법원 ○○○○.○○.○○. 자 ○○◇○○ 결정.

(다) 헌법재판소 결정: 헌법재판소 ○○○○.○○.○○. 선고 ○○헌◇○○ 결정.

## 5)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

(가)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, 자료명, <해당 URL> (최종접속일자).

(예) 저작권위원회, 저작권 법률상담,

<<http://counsel.copyright.or.kr/counselQueAns/counselQueAnsDetail.srv?seq=68>> (최종 접속: 2012.11.02.).

(3)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

1) 저서인용: 저자명, 앞의 책, 면수.

2) 논문인용: 저자명, 앞의 글, 면수.

3) 논문 이외의 글 인용: 저자명, 앞의 글, 면수.

(4) 기타 사항

- 1)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. 저자간의 표시는 /로 구분하되 /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.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.  
(예) 서정범/김연태/이기춘, 『경찰법연구』, 제2판, 세창출판사, 2012, 11면.
- 2) 외국문헌과 외국판결을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.
- 3) 면수의 표기는 다음에 의한다.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(11면, 15면-19면)으로, 외국어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.(p.11, pp.15-19) 또는 S.(S.11, S.15 ff.)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.
- 4)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(:)으로 연결하고,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(:)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출처 맨 뒤에 “~에서 재인용”이라 밝힌다.

### 3. 참고문헌의 표기

#### (1) 순서

국문,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, 단행본, 논문,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.

#### (2) 국내문헌

- 1) 단행본의 경우: 저자명, 『서명』, 판수, 출판사, 출판년도.
- 2) 논문의 경우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「잡지명」 제○권 ○호, 출판년도.  
부록 : “규제와 법정책” 원고 작성방법 377

#### (3) 외국문헌의 경우 “The Bluebook: A Uniform System of Citation”을 준용한다.

### 4. 논문초록의 표기

- 1) 국문초록은 제목-저자 다음에 첨부한다.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작성한다.
- 2) 영문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부한다. 외국어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.
- 3)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.